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1643
----------	-------

제안연월일 : 2025. 7.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647호	강경숙의원	2025.1.20.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2.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9810호	조정훈의원	2025.4.15.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나.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 7. 8.)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하며, 기존 시설 또한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8호 중 “담배를”을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 구역은 제외한다)	<u>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u> <u>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u> 를----- -----「 <u>고등교육</u> <u>법</u> 」----- ----- -----
19. ~ 32. (생 략)	19. ~ 32. (현행과 같음)